

11. 消防法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內務部公告 第1995-44號 1995. 4. 15

1. 개정취지

소방법이 개정(1994. 12. 22. 법률 제 4, 800호)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안전점검대상·방법등의 기준과 소방안전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장소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미만의 것으로서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누전경보기·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소방시설의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등

의를 생략하도록 함.

나. 2급 방화관리자 자격범위에 소방관서에서 고용원등으로 채용되어 화재진압 또는 화재진압 보조업무를 1년이상 근무한 사람과 군부대에서 소방대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포함함.

다.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장소의 규모에 따라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자의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대상물에 대한 관리·감독자종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염처리 대상이 되는 특수장소의 범위에 전시장 및 비디오방을 포함하고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중 섬유판 및 무대막을 제외하며 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있다고 인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방법령에 규정하는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마. 위험물판매취급소에서 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은 지정수량 10배 미만으로 하던 것을 지하탱크저장시설에 저장할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20배까지 허용하도록 완화함.

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범위에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난방용일반취급소 및 전기수용가가 50호미만인 도서지역 또는 전기수용가가 5호미만인 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용 위험물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추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완화도록 함.

사. 소방시설중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소화활동설비로 구분하여 소방서의 예방검사대상에서 경방조사대상으로 조정하고 대형화재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토록 함.

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폐지하는 대신 종전의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대상인 층수가 7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수가 3이상인 특수장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자. 근린시설·위락시설·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일 때에만 설치토록 완화함.

차. 특별피난계단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연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함.

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의 범위에 대형화재의 발생우려가 많은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5층이상인 것을 추가함.

타.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수장소에 그보다 기능이 우수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면제하도록 기속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소지를 제거하고 물류단지 건설촉진을 위하여 랙크식 위험물저장창고에 스프링클러 설비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창고의 면적·높이등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파. 소방시설에 대한 1건 공사의 도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1인의 공사업자가 동일 대지 또는 동일건축물의 공사를 분리하여 도급받은 때에도 이를 합산한 것을 1건 공사의 도급액으로 보도록 명정하

여 민원의 마찰소지를 제거함.

하. 소방공사감리 대상을 건축허가동의 대상으로 하던 것을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아파트의 경우 1만5천제곱미터)의 것은 시공감리를 면제하고 완공검사만 받도록 함.

거. 소방공사완공감리업자로부터 소방시설 완공정밀종합점검을 받은 특수장소는 소방서장에 의한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면제하고 소방시설완공종합정밀점검에 종사하는 사람은 완공검사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너. 소방시설공사업자의 하자보수기간은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의 경우에는 1년,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에는 2년, 소화활동설비의 경우에는 3년으로 규정하고 하자보수요청·하자여부의 결정 및 이의제기의 절차를 신설함.

더. 소방시설공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액과 예치방법 및 보증금의 사용방법·하자보수의 종료등 하자보수보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러. 소방공사의 감리대상중 상주감리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아파트를 제외한 특수장소로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 것으

로 완화함.

머.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중앙위원회의 경우에는 9인으로, 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7인으로 하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함.

버.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면·직무·비밀준수·수당 및 사무원의 지원, 규칙제정등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서. 특수장소의 범위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제외하며, 비디오방 및 위험물 전용창고를 특수장소에 추가함.

어. 1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중 철강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외함.

저.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수장소로 하던 것을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수장소로 완화조정하고 도시가스시설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2급 방화관리대상에 추가함.

처. 인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중 산화성고체 및 자기반응성물질에 대한 세부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커.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은 1급·2급·

3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소방시설공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소방시설공사업외에 다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두어야 할 기술인력으로는 소방설비 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1급외에 소방설비기사 2급 · 소방공무원으로 10년이상 예방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소방관련업체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들 수 있도록 함.

터.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중 동력소방펌프설비 · 소화기의 정비, 비상경보설비 · 누전경보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등 경미한 공사를 삭제하여 소방설비공사업체 · 방화관리자등이 할 수 있도록 완화함.

페. 종전의 소방시설설계업을 1급 · 2급 · 3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소방시설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소방시설설계업외 다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으로 구분하고,

◦ 전문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종전에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를 채용한 경우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을 설계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의 설계를, 그밖의 소방설비기사 2급 자격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연면적 2만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종전에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채용한 경우에 연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을 설계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설계를, 건축기사 1급 · 건축설비기사 1급 · 공조냉동기계기사 1급 자격자로서 10년이상 소방시설설계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설계를 담당하도록 완화함.

허. 종전의 소방공사감리업은 1급 · 2급 · 3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설계도서대로 시공지도하는 시공감리업과 소방서의 완공검사 대신에 민간전문기술업체에서 완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완공감리업체로 구분하고,

◦ 소방공사시공감리업체에서 종전에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를 채용한 경우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 특수장

소의 소방시설공사시공감리를 할 수 있던 것을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10년이상인 사람을 채용한 때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수장소의 시공감리업무를, 그밖의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급 자격자를 채용한 때에는 연면적 2만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의 시공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 소방공사완공감리업체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 1인과 소방설비기사등 보조기술인력 3인이상을 채용,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담당하도록 하여 완공감리업체의 완공감리를 받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서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도록 함.

고. 소방공사완공감리의 방법은 소방시설별 주요구성부분의 성능시험, 국가검정

품 및 인정품 사용여부 확인, 종합정밀 점검표의 작성, 성능시험성적표 교부등을 그 내용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199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내무부장관(참조: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번호 및 주소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무부 소방국 예방과(731-27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마’하면 부실시공 ‘혹시’하면 성실시공